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15호

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

연번	자치구	명 칭(예정)	위 치	면적(㎡)	비고
1	서대문구	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(아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)	북아현동 221-7 일대	7,298.5	-

※ 면적은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
2. 권리기준산정일 : 2024. 4. 24.(수)

※ 입안권자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

3. 지정사유

- 기존 세대수 등이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- ※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으로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6. 안내사항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☎02-2133-7060), 재정비촉진사업과(☎02-2133-7224)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(☎02-330-16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- ※ 서울시는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」(2023. 10. 26. 시행)에 따라

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’의 권리산정기준일을 ‘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’로 따로 정함에 따라 이와 같이 고시함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■ 관계도면

○ 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(아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)

